

의안번호	제 54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10월 5일

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
번호

540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5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, “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
 - ※ 신축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예정일 : '20. 12. 14.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-2
- 규 모 : 부지 3,305㎡, 건물연면적 2,565㎡ / 지하1층, 지상4층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
- 수탁기관 :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 - ※ 現 근로자복지관 수탁기관 :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(의장 강국모, '14. 7. 21 ~ '21. 2. 28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사업비 : 83,580천원(도비 100%) * 연도별 변동가능
- 위탁 주요사무
 -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·교육사업
 -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
 - 각종 교육·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·문화사업
 - 근로자 및 그 가족,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근로자복지를 위한 사업
- ※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(붙임)

3. 참고사항

現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
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814-39
- 규 모 : 부지 2,345㎡ , 건물연면적 997.41㎡(지상3층)
- 수탁기관 :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(2014. 7. 21 ~ 2021. 2. 28)
- 사 업 비 : 54,500천원(도비 100%)
- 주요업무
 - 노동관련 단체 협력기반 구축
 - 근로자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교양강좌·건강증진 사업
 - 비정규직·소외계층 근로자 지원 사업 및 노동법률 상담
 - 청소년 및 예비 직장인 직업진로 지도 및 노동법 교육
- 조직·인력 : 6명(의장1, 사무처장1, 총무국장1, 조직국장1, 사무직원2)
 - ※ 의장 : 강국모(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의장)
- 이용현황 : 8,527명('19년도) * 노동상담(1,321건)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」 제4조(관리운영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I. 추진근거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39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- 「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」 제4조(관리운영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II. 시설현황

- 시설명 :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
- 위치 :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-2
- 규모 : 연면적 2,565㎡(776평) / 지하1층, 지상4층
- 주요시설
 - 대회의실 1, 중회의실 1, 소회의실 1, 사무실 12
 - 프로그램실 1, 체력단련실 1, 휴게실 1, 다목적실 1, 창고 1, 기계실 1
- 준공예정 : '20. 12. 14.
 - ※ 現 근로자종합복지관 : 복지정책과로 재산이관(보훈단체 사용)

III. 위탁개요

- 위탁범위 :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전반
- 위탁기간 : 위·수탁협약일부터 3년(예정 : '21. 1. ~ '23. 12.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사업비 : 83,580천원(도비 100%) *연도별 변동가능

○ 위탁사무

-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·교육사업
-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
- 각종 교육·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·문화사업
- 근로자 및 그 가족,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근로자복지를 위한 사업

※ 現 근로자복지관 수탁기관 :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(의장 강국모, '14. 7. 21 ~ '21. 2. 28)

IV. 추진체계 및 절차

① 추진계획	• 추진계획 수립	'20. 9월
② 의회동의	• 민간위탁 의회동의(10월 회기중)	'20. 10월
③ 수탁방법	• 수탁기관 선정 - 방법 : 공개모집(공고 7일) - 자격 :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	'20. 11월
④ 수탁심사	•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- 구성 : 6~9명 정도 - 심사 : 공신력, 사업계획, 사업수행능력 등 - 선정 : 심사기준표 의함(고득점자 선정)	'20. 11월
⑤ 협약공증	• 협약체결 및 공증	'20. 12월
⑥ 사무개시	• 위·수탁 사무개시	'21. 1월

V. 세부 추진계획

① 수탁기관 선정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('20. 11월)

- 도홈페이지 공고(7일) 후 사업계획서 접수,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(고득점자 선정)

○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도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-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, 법인(단체)의 귀책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해지 되거나 민·형사상 책임을 진 이력이 있는 법인(단체)은 제외

○ 위탁조건

- 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
-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 이행

2]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

○ 개최시기 : '20. 11월 *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- 구성인원 : 6~9명 이내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
※ 당연직 3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), 기타(전문가) 위촉

- 심사항목 : 사업계획 적정성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등

○ 계획설명 :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

○ 수탁자 선정 : 고득점기관 선정

3] 협약체결 및 공증

○ 체결시기 : '20. 12월

○ 내 용 :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

VI. 향후계획

- 수탁기관 공모 : '20. 11월
-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20. 11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20. 12월
- 수탁기관 사무편람 승인 : '20. 12월
- 위·수탁사무 개시 : '21. 1월 ~

관계법령

□ 근로복지기본법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-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 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 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 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 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□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

제4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-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재위탁할 수 있다.
- ③ 복지관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」와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5.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